

이메일 제목: COVID 임대료 구제 연장 프로그램 신청 거부 됨 [확인 번호] [Confirmation Number]

[Name]님 귀하,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세계적 유행병 기간 중 뉴욕주 전체 세입자들이 직면한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해 주의회에서 시행하는 1 회성 임대료 보조금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Andrew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의 연장(이하 “코로나 임대료 구제 연장 프로그램”) 및 관련 수급 자격 기준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하신 신청서를 자격 기준이 확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해 주신 정보를 검토하고 확장된 자격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한 후에도 귀하의 신청서는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N - 거부 사유(들)]

HCR은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따라 귀하의 신청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세무 및 재무 부서(Department of Tax of Finance) 및 임시 장애 지원실(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833) 499-0318 번]으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의 번역 된 버전은 저희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繁體中文 / Русский / Kreyòl ayisyen / 한국어 / বাংলা

감사합니다,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거부 사유 설명

01 -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가 불충분합니다.

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서류는 소득 적격성 또는 임대료 부담을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신청자는 신청서 검토 중 요청된 입증 문서를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02 -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에서 하나 이상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 시 질문에 답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청 검토 중 요청된 필수 서류를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03 - 프로그램에 대한 소득 적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 및 신청 당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해당 카운티 및 가구 규모에 대한 지역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카운티에서 지역 평균 소득의 80%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7/crrp2020_eligible_income_80ami.pdf

- 04 - 신청자는 세입자 또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임대료 보조금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이거나 Mitchel Lama co-op 에 거주합니다.
신청 가구는 세입자 또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임대료 보조금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청자의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입자에 국한됩니다.
- 05 - 신청자는 지원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의하면, 지원자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비해 지원을 요청하는 2020년 4월 1일과 2020년 7월 31일 사이의 월 소득이 더 적어야 합니다.
- 06 - 신청자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인 높은 임대료 부담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의 가구는 월 총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 07 - 가구의 실업 수당 데이터가 신청서와 상충됩니다.
신청자는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 수당을 받았으며 가구를 소득 적격 기준 이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 08 - 신분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2020년 3월 1일 현재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었거나, 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DMV 요구 사항에 따라 합산 최대 6점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http://nysdmv.standard-license-and-permit-document-guide.sgizmo.com/s3>
- 09 - 신청자는 주 거주지가 뉴욕주인 세입자임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임대 계약서(리스) 사본, 월 임대료 액수에 대한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대 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 임대료 증명서를 제출하여 뉴욕주 내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 필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10 - 임대주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임대주 이름 및/또는 연락처 정보를 통해 유닛 소유권 확인 및 관련 세금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 11 -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신청자가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 12 -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프로그램 계산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0이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반영하거나 다른 주 기관에서 획득한 정보를 반영한 프로그램 계산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0으로 계산되었으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3 - 신청자가 이전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청서가 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어 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이 제공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코로나 임대료 구제 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 - 신청자가 중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자가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두 부 이상 제출했습니다. 한 부의 신청서만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및 연장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모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연장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첫 번째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심사합니다.